

제191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: 2023.09.27.(서면심의)

- **안건명 「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」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**
-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 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투입인원수 산정표의 안전관리 항목 기준인원수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시고, 안전관리 항목 난이도는 1.0 이상만 적용하시기 바람
- 전력시설물공사에서 감리대상 건축물(공동주택 제외)의 연면적 10,000㎡ 이상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
 - 책임감리원(특급), 비상주감리원(고급) 전기공사의 총공사기간 동안 배치 및 특급단가 적용
-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건비로 적용하시기 바람
- 손해배상보험료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만 적용하시기 바라며, 적용요율 및 산출식을 재검토하시기 바람
- 현지사무원 노임단가는 2023.7. 기준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람

붙임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건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공사수행방식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사업여건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'과업내용서'에는 과업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'기술자수 산정(건설공사)'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과업내용 기준에 맞게 적용 필요 -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(3p)/클레임의 사전분석(3p+29p)/최종건설사업 관리보고(3p)/지급자재 조달지원(17p)/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(16p)/ 시서물의 인수인계계획검토 및 관련업무지원(4p)
기 타		○ 용역인원배치 인일수와 배치계획표 상 인일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종합 심의의견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
2023년 9월 15일

심의위원 : _____

본 검토서는 2023.9.15.(금)까지 E-mail(msr001@seoul.go.kr)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건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공사수행방식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사업여건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기 타		○ 평가 적정성 및 배치인력 산출 모두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으며, 사업관리방식(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) 검토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종합 심의의견	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
2023년 9월 15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견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심신이 열악한 환자를 돌보는 병원업무와 동시에 증축공사 진행에 따른 병원 환경유지 및 원활한 병원업무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 단계별 공중간 작업순서, 병원관계자와 작업자간의 분리된 동선, 리모델링으로 인한 소음, 비산먼지(분진), 진동 등의 감소대책, 철거 부산물의 처리 방법, 안전관리 대책 등 검토
	공사수행방식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사업여건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의 공사로서 상기 “공사특성”의 내용을 설계자, 시공자, 건설사업관리자 상호 협의 검토 후 시행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P5, “다. 용역의 업무범위”에서 안전관리업무 추가 - 16) 산업안전보건법의 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”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의 안전관리 조직 등 안전관리 지도 점검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전력시설물공사에서 감리대상 건축물(공동주택 제외)의 연면적 10,000㎡ 이상은 <u>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</u> (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및 운영요령 별표 2의2) - 책임감리원(특급), 비상주감리원(고급) <u>전기공사의 총공사 기간 동안 배치 및 특급단가 적용</u> ○ 소방감리원은 주1회 현장방문하는 일반감리로서 타 공종의 비상주감리원(월1회)보다 높은 감리대가 산정 재 검토 필요 ○ P14, “10. 건설사업관리대가”에서 가항 내용 수정 - 각 분야별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배치 및 용역대가 산정에 의거 적합하게 배치하고 용역대가 산정

항 목	검 토 의 견
기 타	○ 용역명 수정 -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
종합 심의의견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
2023년 9월 15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견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공사수행방식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	사업여건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
기 타		○ 본 공사는 병원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병원의 운영 중 공사가 진행되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화재 발생 시 소화활동 및 구조, 구급 활동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와 주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○ 소방공사비 입력항목에 소방기계 금액만 반영됨. 소방전기분야의 공사비 산정하여 합산 필요함 ○ 공사비 입력항목에 소방분은 기계, 전기에 포함되어 작성됨, 소방공사부분 별도로 책정 바람
종합 심의의견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
2023년 9월 11 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 건 명: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

항 목		검 토 의 견
사업특성평가 적정성	공사특성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
	공사수행방식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
	사업여건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
사업관리방식 검토		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
배치인력 산출 적정성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투입인원수 산정표의 안전관리 항목 기준인원수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시고, 안전관리 항목 난이도는 1.0 이상만 적용하시기 바람 ○ 투입인원수를 산정기준 대비 50%~70%로 임의 조정하였으나,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[별표2]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준의 1-가-(5),(6)을 참고하여 재산정하시기 바람
용역비의 적정성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건비로 적용하시기 바람 ○ 안전관리비는 요율 등을 수정하여 재산정 바람[기술심사담당관-25362('22.6.23.)호 공문 참조] ○ 현지사무원 노임단가는 2023.7. 기준 단순노무종사원 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람 ○ 손해배상보험료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금액만 적용하시기 바람, 적용 요율 및 산출식을 재검토하시기 바람
종합 심의의견		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

2023년 9월 18일

심의위원 :